공고 제 52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2일

조리읍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 *운	정 *운 1980-04-28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0-12